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9일

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은 비인기 생활체육경기장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체육대회(행사) 이외에는 사용신청이 없으므로 무료 개방하여 구미 인라인롤러 생활체육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비인기 생활체육인 인라인롤러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(안 별표 2, 별표 6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구미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기존 조례 별표 2, 6의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비인기 스포츠로 체육대회(행사) 이외에는 사용신청이 없는 구미 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•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